

예산총칙

2024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 (단위: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629,674,443	18,890,233
일반회계		623,148,492	18,694,455
특별회계		6,525,951	195,779
	기타특별회계	6,525,951	195,779
	주차장 특별회계	5,956,120	178,684
	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	483,522	14,506
	지하수관리 특별회계	71,809	2,154
	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	14,500	435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,391,661천원(일반 6,231,000천원, 재해·재난목적 23,492,961천원, 내부유보금 667,700천원)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보조금, 특별교부세(금), 특정목적기부금 등 이전재원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다.

※ 예산서 자원 표기

[국] 국고보조금, [지]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, [기] 기금보조금
[특] 특별교부세, [별] 특별조정교부금, [시] 시비보조금, [구] 자체자원